G - 118 - 2015

수영장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

2015. 11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- 작성자 :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재희 교수
- 제·개정 경과
 - 2015년 11월 산업안전일반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- 관련규격 및 자료
 - KS G 5821-1 수영장 시설-제1부: 일반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
 - KS G 5821-4 수영장 시설-제4부: 출발대의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
 - KS G 5821-11 수영장 시설-제11부: 이동식 수영장 바닥 및 이동식 칸막이의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 방법
 - 안전보건기술지침 「저압전기설비에서의 감전예방을 위한 기술지침」
 - Managing health and safety in swimming pools, HSE, 2003
 - 산업안전보건용어사전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, 2006
-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 -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(www.kosha.or.kr) 안전보건 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- 동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격 및 자료, 법규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개정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5년 12월 7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G - 118 - 2015

수영장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제안개요

I. 제정이유

수영장 시설 및 설비의 설치, 이용,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

II. 제정(안)의 주요내용

- 1. 이 기술지침은 다음의 기존 기술지침을 통합한 제정(안)임
 - G-42-2012 수영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
 - G-43-2012 수영장 설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
 - G-45-2012 수영장 시설관리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
- 2. 이 기술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
 - 수영장의 시설기준
 - 수영장 부대시설의 안전기준
 - 수영장에서의 안전한 통행
 - 수영장에서의 유해위험요인 및 대책 등
- 3. 주요 수정,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음
 - 목적 및 적용범위 등을 통합하고 수정함
 - 기술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정리하고 이를 보완함

수영장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

1. 목 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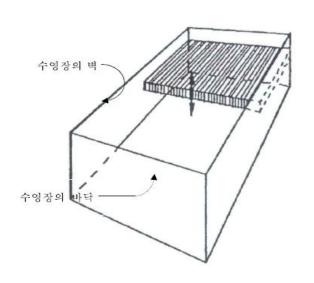
이 지침은 수영장 시설 및 설비의 설치, 이용,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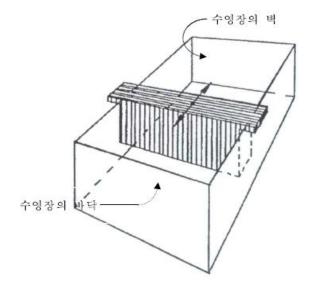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수영장 시설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적용한다.

3.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(가) "수영장"이라 함은 수영장 풀 및 내부 시설물 등을 설치한 장소 및 바로 인접 한 구역을 말한다.
 - (나) "출발대"라 함은 수영장 가장자리에 위치한, 다이빙경기에서 출발 지점으로부터 물 안쪽으로 높게 설치하여 입수 가능하도록 한 출발대를 말한다.
 - (다) "이동식 수영장 바닥"이라 함은 <그림 1>과 같이 수영장의 수심을 변화시킬 수 있게 설계된 조정할 수 있는 바닥을 말한다.
 - (라) "이동식 칸막이"라 함은 <그림 2>와 같이 수영장을 구획하기 위하여 단단하 게 분할하는데 사용하는 이동식의 구조물을 말한다.





<그림 1> 이동식 수영장 바닥의 예 <그림 2> 이동식 칸막이의 예

- (마) "수심"이라 함은 물의 표면과 수영장 바닥 또는 이동식 수영장 바닥 사이의 물의 깊이를 말한다.
- (바) "끼임"이라 함은 신체, 신체 일부 또는 옷이 끼여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.
- (사) "레인선(Lane line)"이라 함은 수영 레인을 구획하는 표시로 수면상에 설치한 선형 부유 장치를 말한다.
- (아) "달반자(Suspended ceiling)"라 함은 상층 바닥틀 또는 지붕틀에 달아맨 천장 을 말한다.
- (자) "안전 초저전압(Safety extra-low voltage : SELV)"이라 함은 정상상태에서 또는 다른 회로에 있어서 지락고장을 포함한 단일고장상태에서 인가되는 전 압이 초저전압을 초과하지 않는 전기시스템을 말한다.
- (차) "신축(伸縮)이음(Expansion joint)"이라 함은 온도변화, 콘크리트의 수축, 부동 침하, 적재하중의 변화 및 이동하중의 진동 등으로 발생 가능한 균열과 파손 을 대비하여 두는 이음새를 말한다.
- (카) "평줄눈(Flush joint)"이라 함은 벽돌의 면과 평행하게 처리한 줄눈을 말한다.
- (타) "대류형 방열기(Convector-type heater)"라 함은 금속케이스 속에 방열판(fin) 이 달린 튜브가 들어 있어, 하단으로 공기가 유입되면 케이스 내에서 가열되 어 상부로 유출되는 것으로, 공기의 대류(對流)를 이용하는 난방기를 말한다.

G - 118 - 2015

(2) 그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4. 수영장의 시설기준1)

4.1. 수영장 내부

4.1.1 수영장 수심

- (1) 수심 1.5 m 이하의 깊이에서는 급격한 수심의 변화가 없는 구조로 한다.
- (2) 바닥의 경사는 완만하게 하여 수심 1.5m 이하의 깊이에서는 1:10 이하의 경사도 를 유지한다.
- (3) 수심의 급격한 변화가 있는 바닥의 경우에는 대비가 되는 색이나 문양을 사용하여 변화지점이 쉽게 눈에 띄도록 한다. 색을 사용하는 때에는 수영장의 바닥에 잠수한 사람과 혼동되지 않도록 한다.
- (4) 훈련이나 시합용 경기장에서는 수심이 최소 1 m 이상 되는 것이 좋다. 초보자를 위한 별도의 강습용 수영장이 없는 경우에는 0.9 m의 깊이가 아동 등에 대한 강습을 고려할 때 더 바람직하다.

4.1.2 수영장의 마감 처리

4.1.2.1 수영장 내부의 마감

(1) 수영장의 내부 특히, 수면 아래쪽에는 부상을 일으킬 수 있는 돌출물이나 날카로 운 모서리가 없어야한다.

¹⁾ 아래 내용에서의 수치는 HSE Guidance의 Managing health and safety in swimming pools에서 인용하 였으며 권장치로 제시함

G - 118 - 2015

- (2) 움푹 들어간 부분, 돌출 부위, 또는 손잡이를 설치할 경우에는 위험을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한다.
- (3) 입수구와 배수구, 인공파도 배출구, 넘치는 물을 모으기 위한 일수구(溢水口) 등에는 보호용 덮개를 적절하게 설치한다. 덮개는 손, 발 등이 끼이지 않도록 설계한다.
- (4) (3)과 같은 곳에서는 지나치게 강한 흡입이 발생하지 않도록한다. 강한 흡입력으로 인해 신체가 덮개에 밀착될 수 있다. 따라서 덮개에는 날카로운 부위가 노출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. 물살이 있는 부위에서는 특히 위험하다.
- (5) 배수관 하나 당 적어도 두 개의 배수구가 일정 간격을 유지하도록 설치한다. 이 때 간격은 두 개의 배수구에 어린이의 몸이 동시에 닿지 않을 정도이어야한다.
- (6) 배수구의 흡입량은 흡입구로 몸이 빨려 들어가거나, 흡입구에 고착되게 하거나 또는 머리카락이 휩쓸려 들어갈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.
- (7) 배수 지점 근처의 유속이 모든 상황에서 0.5 m/s 이하가 되지 않을 경우, 수영장에서의 배수는 피하되, 추가적으로 다음 요구 사항 중 하나에 적합하도록 한다.
 - (가) 각 배수 배관에 병렬로 연결되고. 2 m 이상 거리에 놓인 다수의 배수 지점
 - (나) 주변 흡입 배수가 이루어지는 돔(Dome) 모양의 흡수구(Grids)
 - (다) 중력 이용 공급 탱크
 - (라) 최소 면적 1m²의 단일 흡수구
- (8) 손잡이를 설치할 경우, 벽 안쪽으로 들어가게 설치하여 손잡이와 벽 사이에 팔다리가 끼이는 것을 방지한다.
- (9) 발 받침대를 설치할 경우, 벽 안쪽으로 들어가게 설치한다.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수영장과 대비되는 색으로 칠해 사용자의 눈에 잘 띄도록한다.

G - 118 - 2015

4.1.2.2 바닥의 마감

- (1) 다음의 부위에는 미끄러짐 방지 및 마찰 방지가 되도록 마감한다.
 - (가) 수영장의 끝에 위치한 벽이 턴 동작을 위한 지지물로 사용되는 경우, 또는 배영을 위한 출발점으로 사용되는 경우
 - (나) 경사가 완만한 놀이용 수영장의 주변부위 및 수심이 얕은 지점
- (2) 경기용 레인이 바닥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, 수영장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바닥의 선 표시는 수심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.
- (3) 육안으로 수영장의 바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음은 효과적인 구명활동에 필수적이다. 수영장의 바닥에 위치한 사람을 인지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바닥의 문양이나 색상은 피한다.

4.1.2.3 벽의 마감

- (1) 통행이 빈번한 곳의 벽 마감은 바닥에서 최소 2 m 높이까지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돌출부가 없이 매끈하도록 한다.
- (2) 기둥의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한다.
- (3) 통행로 주변의 조경시설은 바닥에서 최소 2 m 높이까지 통행이 방해될 수 있는 돌출 부위가 없도록 처리한다.

4.1.3.3 천장의 마감

- (1) 물을 이용하는 장소의 천장은 천장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증기의 응결을 고려하여 설계한다.
- (2) 가능하면 달반자(Suspended ceiling)의 사용은 피한다. 불가피하게 설치할 경우, 천장 내부와 지지물 및 조명 설비를 일상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.

G - 118 - 2015

4.1.3.4 가장자리의 마감

- (1) 수영장의 가장자리는 물과 구분되는 색으로 마감한다. 특히 가장자리가 수면과 수평을 이루거나 수면 아래로 부분적으로 잠기는 수영장의 경우에는 반드시 구 분되는 색으로 처리한다.
- (2) 훈련이나 시합을 주목적으로 하는 수영장의 가장자리는 수면보다 높게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. 수면보다 높은 가장자리는 사용자가 수영장의 경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다.
- (3) 수영장 주변으로부터 수영장의 깊은 지점까지 완만하게 경사진 놀이용 수영장의 경우 가장자리를 식별하기 쉽게 처리할 필요는 없다.

4.2 수영장 출발대

- (1) 수영장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출발대는 고정식 또는 탈착식으로 사용 가능하나, 고정식은 미숙한 이용자의 사용 시 사고위험성이 높으므로 탈착식이 바람직하다.
- (2) 경기 또는 훈련의 정해진 목적 외에 출발대를 함부로 이용하지 못하도록한다.
- (3) 수면과 가장자리의 바닥이 수평을 이루는 수영장의 경우, 가장자리를 높여 출발 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
4.3 이동식 수영장 바닥 및 이동식 칸막이

4.3.1 이동식 수영장 바닥

(1) 수영장 바닥의 일부만을 이용하는 이동식 바닥은 측면을 통해 이용자가 들어 올려진 바닥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한다. 이 경우 다음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이동식 수영장 바닥 아래로 접근하지 못하도록한다.

G - 118 - 2015

- (가) 이동식 바닥의 열린 끝 쪽에 위치한 칸막이
- (나) 덧문(flap)
- (다) 수영장 바닥에 이동식 바닥을 연결하는 가장자리
- (2) 이동식 수영장 바닥과 수영장 벽 사이에 끼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되, 이동 식 바닥과 수영장 벽 또는 칸막이 사이의 틈새는 8 mm 이하로한다.
- (3) 이동식 바닥과 수영장 벽 사이에 탄성 고무 완충물을 설치하면 끼임에 의한 사고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. 또한 정기적으로 고무 완충물의 부착 상태를 점검한다.
- (4) 기울기를 주어 수심을 점차 얕게 만들 경우, 바닥의 기울기는 1:10 이하로 하며 바닥은 미끄러짐 방지와 마찰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야한다.
- (5) 바닥의 이동을 제어하는 장치는 바닥 전체를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한다.
- (6) 수심은 수영장 내부와 외부 양측에서 잘 보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한다.
- (7) 수심의 표기는 선명하고 정확한다. 이는 수영장이 다이빙 용도로 사용될 경우 중요하다.
- (8) 수영장이 다이빙 용도로 사용될 경우, 아래의 조치를 고려한다.
 - (가) 이동식 바닥의 설치로 인해 다이빙이 불가능할 경우, '다이빙 금지' 표시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설치한다.
 - (나) 수심이 다이빙에 적합한 깊이가 아니면 다이빙을 금지한다.

4.3.2 이동식 칸막이

(1) 측면으로 이동하는 칸막이의 경우, 칸막이 하단과 수영장 바닥 사이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도록한다.

G - 118 - 2015

- (2) 칸막이 하단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경고문을 물 속 및 수영장 바깥에서도 잘 볼 수 있도록 설치한다.
- (3) 이동식 칸막이의 표면 위 틈새는 한 방향으로 8 mm 이하로한다.
- (4) 이동식 칸막이와 수영장의 벽 및 바닥과의 틈새는 8 mm 이하로한다.
- (5) 칸막이 상부의 표면은 배수가 가능하며 미끄러짐 방지처리가 되어 있어야한다.
- (6) 칸막이와 레인선(lane line)의 연결부위가 돌출되어서는 안 된다.
- (7) 물속에 잠겼던 칸막이가 수면위로 드러날 경우, 수영장의 벽이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단단히 고정시킨다.
- (8) 칸막이의 상부가 수면과 수평을 이룰 때, 그 가장자리를 밝게 처리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한다.

4.4 기타 시설

4.4.1 탈의실과 옷장

- (1) 탈의실 내부 양 측면에 옷장을 설치할 경우, 탈의실의 통로는 안전한 통행을 위해 최소 1.2 m 의 폭을 유지해야 하며 1.5 m 폭이 바람직하다.
- (2) 옷장문의 날카로운 모서리나 꽂힌 열쇠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. 열려 있는 상부의 옷 장문에 하부 옷장의 사용자가 머리를 부딪칠 위험이 크므로 자동으로 닫히는 문을 설치한다.
- (3) 옷장문의 복원력이 지나치게 강할 경우, 옷장을 사용하는 동안 문을 잡고 있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범위를 유지하도록 한다.

G - 118 - 2015

4.4.2 투명 또는 반사 재질의 사용

- (1) 수영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투명 재질은 몸에 의한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 한다.
- (2) 반사 재질로 인한 눈부심은 작업자나 이용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히 고려한다.

5. 수영장 부대시설의 안전기준

5.1 환기 및 냉방에 대한 안전

- (1) 효과적이며 적절한 환기를 위해 충분한 양의 신선한 공기나 정화된 공기가 공급하기 위해 기계식 환기 또는 냉방장치를 설치한다.
- (2) 필요한 경우, 환기 장치에는 오작동을 알려줄 수 있는 시각적 또는 청각적 경고 장치를 부착한다.
- (3) 수영장의 고온다습한 구내 환경과 적절하지 못한 환기는 수영장의 구조물과 마 감재를 훼손시킬 수 있으며 또한 전기시설과 관련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.
- (4) 탈의실 및 부속시설을 포함한 수영장 구내는 쾌적한 온도를 유지해야 하며 적절 한 환기가 이루어져야한다.
- (5) 수영장의 수온은 27 ℃~29.5℃ 의 범위가 적당하며, 실내는 수온보다 1℃ 정도 높은 온도가 가장 적당하다. 이는 과도한 수증기 응결을 방지할 수 있다.
- (6) 수영장의 기온이 위의 범위를 넘어 장시간 유지되면 안전요원의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.

G - 118 - 2015

- (7) 열 회수를 목적으로 공기를 재순환시킬 때, 수영장 공기에 유해물질이 증가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. 이런 경우, 최소한 30 % 이상의 외부 공기를 공급한다.
- (8) 탈의실은 24℃ 정도의 실온을 유지해야 하며, 수증기의 응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간당 10 회의 환기가 이루어져야한다. 기타 공간은 20 ℃ 정도의 실온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
5.2 채광 및 조명에 대한 안전지침

- (1) 수영장에는 적절하고 충분한 채광 또는 조명을 제공한다.
- (2) 자연채광이 이루어지는 창은 청결히 유지한다.
- (3) 인공조명은 적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.
- (4) 수영장의 바닥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도가 저하되면 조명기기를 교체한다.
- (5) 정전 시 별도의 전원에 의해 자동으로 점등되는 비상용 조명이 있어야한다. 이는 비상 시 안전한 피난 및 대피를 가능하게 한다.
- (6) 비상용 조명은 매일 점검한다.
- (7) 적절한 조도가 유지되도록 매년 조도치를 측정한다.

5.3 유리 및 기타 투명 소재의 사용 시 안전지침

- (1) 창을 포함하여 벽, 칸막이, 문, 조명기구 등 투명 또는 반투명의 소재는 잘 파손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.
- (2) 파손이 잘되지 않는 투명 또는 반투명 재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G - 118 - 2015

- (가) 폴리카보네이트(Polycarbonate)
- (나) 유리블록
- (다) 망입(網入)유리
- (라) 접합유리
- (마) 강화유리

다만 강화유리는 다음 <표 1>의 기준을 참조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
 공칭유리두께(mm)	최대 권장 크기(m)
3311-11 -11 (IIIII)	7-11 23 2-1 (III)
8	1.1 × 1.1
10	2.25 × 2.25
12	3 × 4.5
15	제한 없음

<표 1> 강화유리의 최대권장크기

(3) 부딪힐 위험이 높은 부위에 사용된 유리 또는 투명소재는 눈에 띄기 쉽도록 표시를 한다.

5.4 이동형 전기기기에 대한 안전지침

5.4.1 이동형 전기기기의 안전지침

- (1)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의 전기기기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한다. 다만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, 전기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기기의 선별과 사용에 유의한다.
- (2) 다음과 같은 전기기기는 감전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.
 - (가) 공기압을 이용하는 기기
 - (나) 방수용 기기
 - (다) 배터리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기기

G - 118 - 2015

- (라) 안전초저전압(SELV) 전원을 사용하는 기기
- (3) 2.5 V 이하의 매우 낮은 전압의 전기도 물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기기를 수영장의 근처에서 사용할 경우, 전기기기가 물속으로 빠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.
- (4) 콘센트를 이용하여 전원을 공급하는 음향기기 또는 이와 유사한 장비는 방수처리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수영장 주변에서 사용하지 말아야한다.
- (5) 방수처리가 되어 있지 않는 전기기기는 수영장에서 떨어진 건조한 장소에 위치시켜야한다.
- (6) 스피커나 전자시계와 같은 전기기기는 수영장 이용자의 손이나 물이 미치지 않는 곳에 위치시켜야한다. 또한, 이런 전기기기는 적절한 장치를 이용하여 전원에 영구적으로 연결한다.

5.4.2 안전점검

- (1) 전기 시설물과 관련 기기는 안전한 상태를 유지한다. 이를 위해 규칙적으로 제조자의 사용지침에 맞추어 점검한다.
- (2) 점검의 횟수는 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.
- (3) 점검을 일상점검, 정식육안검사, 조사 및 시험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면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다.
- (4) 안전하지 못한 전기설비가 실수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관에 유의한다.
- (5) 전기설비 점검을 기록하는 것은 관리 과정을 파악하고 사후 검토하는 데에 중요 하므로 점검기록의 작성이 바람직하다.

G - 118 - 2015

5.4.3 일상점검(User Check)

- (1) 일상점검은 전기설비의 사용자가 기본적인 훈련을 받은 후 실시할 수 있다.
- (2) 일상점검은 육안으로 전기설비가 안전하지 않은 상태인지를 점검한다.
- (3) 일상점검 시 장비를 해체하거나 또는 플러그를 뽑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.
- (4) 일상점검을 통해 전기설비의 파손이나 장애의 대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.
- (5) 일상점검을 담당하는 작업자는 사전에 이와 관련된 충분한 훈련을 받아야한다.
- (6) 일상점검을 담당하는 작업자는 점검에 필요한 적절한 시간을 부여받아야한다.

5.4.4 육안검사(Formal Visual Inspection)

- (1) 위험을 관리하고 일상점검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식육안검사가 필요하다. 정식육 안검사는 체계적인 방법으로 전문가가 시행하는 정기적인 검사이다.
- (2) 정식육안검사에는 플러그 덮개의 해체 확인, 적정한 퓨즈의 사용 여부와 상태, 연결부위의 안전여부 등이 포함한다.

5.4.5 검사 및 시험(Combined Inspection and Testing)

- (1) 전기설비의 검사 및 시험을 통해 접지 불량, 절연 피복의 불량, 기기 내외부의 오염이나 습기 등과 같은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으며, 이는 일상점검이나 정식육 안검사에서는 발견하기 어렵다.
- (2) 검사 및 시험은 자격 있는 전문가가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 실시한다.

G - 118 - 2015

6. 수영장에서의 안전한 통행 등

6.1 수영장 인근 등 물기있는 장소

- (1) 물기가 있는 부위에서는 계단을 포함하여 바닥 높낮이의 변화가 없어야한다. 가능하다면 탈의실, 샤워실, 화장실 및 수영장 주변 모두 바닥의 높낮이 변화가 없도록 한다.
- (2) 수영장 풀 주변의 워터 슬라이드와 같이 이용자가 줄을 서서 기다릴 수 있는 지점의 수심이 깊을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용 난간을 설치한다.
- (3) 경사로는 장애인이 수영장으로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줄 수 있다. 수영장 주변에 경사로가 설치될 경우, 수면 위로 돌출되어서는 안 된다.
- (4) 수면으로부터 수영장 주변 바닥까지의 높이가 38 cm를 넘을 경우, 수영장 가장자리에 난간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.
- (5) 수영장 주변의 통로는 이동 시 혼잡을 피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. 수영장 주변의 통로는 최소 2 m의 폭을 유지한다.

6.2 수영장으로의 접근

- (1) 수영장 풀로의 진입은 계단 또는 사다리로 하게 되는데, 이 경우 출입이 쉽고 안전하도록 설계한다.
- (2) 수영장의 수면과 주변이 수평을 이루는 경우, 가장자리에서 수영장 내부로 쉽게 출입할 수 있기 때문에 계단이나 사다리의 수가 적을 수도 있다.
- (3) 경기나 훈련용으로 수영장을 사용하는 경우, 계단과 사다리가 이에 방해되지 않 도록 시설하되. 이용자를 방해하거나 위험에 빠트리지 않도록 설치한다.

G - 118 - 2015

- (4) 수영장 풀로의 접근을 위한 적절한 수단은 다음과 같다.
 - (가) 일반적인 수영장에 있어서 양측면의 끝에서 약 1 m 지점에 사다리를 설치한다. 수영장 가장자리의 중간 지점에 추가로 계단을 만들 수도 있다.
 - (나) 초보자용 수영장에서는 가장자리를 계단으로 처리한다. 불규칙한 형태의 수영 장에서 계단은 가장자리의 형태를 고려하여 설계될 수 있다. 계단의 중간에는 난간을 설치한다.
 - (다) 수면에서 가장자리까지의 높이차가 큰 놀이용 수영장에서는 돌출되지 않는 계단을 통해 출입을 하도록 하며, 계단과 계단의 간격이 15 m 이상 떨어져서는 안 된다.
 - (라) 미끄럼장치의 하단에 위치한 수영장에서 출구 계단은 미끄러져 내려오는 반 대쪽에 위치한다.

6.3 난간, 계단 및 사다리

- (1) 난간, 계단 및 사다리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되 바닥이나 벽체에 단단히 고정시킨다.
- (2) 난간 및 사다리는 손가락, 팔이나 다리 또는 머리가 끼지 않도록 설계한다. 특히, 사다리의 발판과 발판 사이, 사다리와 벽 사이, 손잡이와 벽 사이에 끼임이 발생 하지 않도록 설계한다.
- (3) 난간, 계단 및 사다리는 예상되는 이용자를 배려하여 설계한다. 초보자용 수영장이나 수심이 얕은 물에 출입하는 계단은 발판 사이의 높이를 150~160 mm 정도로 낮게 하며, 너비는 최소 300 mm 이상으로 충분히 넓게 한다. 또한, 계단코는 출입 시 눈에 쉽게 띌 수 있는 색으로 계획한다.

6.4 경사로

(1) 경사로의 기울기는 1:15 이하로 한다.

G - 118 - 2015

- (2) 경사로의 실제 폭은 최소 1 m 이상으로 한다.
- (3) 경사로의 바닥은 미끄럽지 않도록 한다.
- (4) 난간은 경사로 양측에 설치한다.
- (5)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는 휠체어가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도록 한다.
- (6) 경사로의 방향은 혼잡한 장소를 피해 설치한다.

6.5 통행로에서의 장비 보관 등

수영장 주변에 보관하는 장비는 잠재적인 위험원이 될 수 있으므로, 이용객들의 원활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장비보관을 위한 충분한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거나 또는 수영장 주변의 폭을 충분이 크게 한다.

6.6 안전한 환경 유지

6.6.1 청결유지

- (1) 바닥과 계단은 청결히 유지하고 필요시에는 배수를 원활히 하게 한다. 또한 미끄럽지 않도록 한다.
- (2) 벽, 천장, 가구를 포함한 수영장 시설은 청결하게 유지한다.
- (3)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적절한 쓰레기통이 마련한다.
- (4) 쓰레기는 정기적으로 적절히 처리한다.
- (5) 바닥에 엎지른 것은 신속히 청소한다.

KOSHA GUIDE G - 118 - 2015

6.6.2 안전한 작업환경

- (1) 고온의 물 공급 배관의 설치 높이가 충분히 높지 않을 경우에는 배관 표면의 고 온으로 인한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 배관 표면을 적절한 재질로 감싸야한다.
- (2) 고온의 물 공급 배관의 경우, 경고문이나 경고표지판을 배관에 부착한다.
- (3) 밀폐된 공간에는 유해한 가스나 증기로 인해 심각한 재해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작업자는 충분한 대책 없이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.
- (4) 연약한 천장 내부 또는 천장 조명을 위한 작업은 적절한 접근로와 작업용 발판을 준비한다.

7. 수영장에서의 유해·위험요인 및 대책

7.1 수영장 내 통행중의 유해·위험요인 및 대책

수영장 내 통행중의 유해·위험요인과 대책은 <표 2>와 같다.

<표 2> 수영장 내 통행중의 유해·위험요인과 대책

구 분	유해·위험 요인	안 전 대 책	비고
수영장 시설 이용을 위한 횡단 및 대기	수영장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수심 깊은 곳을 가로지르 거나 수심 깊은 지점 옆에 줄을 서게 되는 경우	 적절한 통행 경로를 취할 수 있도록 안 내용 시설물을 설치한다. 수심이 깊은 지점 주변에 난간을 설치한다. 대기 줄이 생기지 않도록 수영장 시설의 운영방식을 조절한다. 	
풀 주변 좁은 통로	풀 주변의 폭 2 m 이하의 좁은 통로가 혼잡과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	 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관리상의 방법을 강구한다. 통로에 설치된 손잡이 등의 돌출물이 있는 경우, 돌출되지 않거나 또는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로 교체한다. 	
위험한 지점 인근의 경사로	바닥차가 있는 두 지점을 연 결하는 경사로가 수심이 깊 은 지점, 수면과 바닥과의	○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의 식별이 용이 하도록 한다.○ 경사로의 양 옆에 난간을 설치한다. 경	

G - 118 - 2015

	차이가 큰 지점, 또는 인공 파도 유입구 인근과 같이 위 험한 지점에 면해 있는 경우	사로가 풀에 접해 있는 경우, 측판이나 중간 난간대를 설치한다. ○ 경사로의 경사가 1:15 보다 급하며 미끄 럼 저항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, 경사로 의 바닥에 추가적으로 바닥 깔개를 설치 한다. 바닥 깔개의 선정은 배수, 미끄럼 저항, 청소 용이성 등을 고려해야한다. ○ 위험표지를 부착한다.
돌출된 기둥이 나 시설물	단독으로 돌출된 기둥이나 시설물이 통행을 방해하거나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	○ 기둥이나 시설물에 눈에 잘 띄는 표시 를 하거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 를 덧씌운다. ○ 기둥의 각진 모서리는 둥글게 하거나 그 각도를 무디게 한다.
옷장 사이의 통로	옷장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 서 위험 요소가 될 경우	○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옷장사이의 간격 이 최소 1.2 m 이상이 되도록 옷장의 위 치를 변경한다. 이 간격이 1.5 m 이상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○ 옷장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장치를 한다. ○ 경고표지를 부착한다.
수영장 내 접 근이 힘든 지 점	수면과 풀 가장자리의 높이 차가 큰 지점, 난간이나 조 경시설에 막혀 접근이 힘든 지점에 의해 응급 시 접근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 은 경우	 수영장 안내도에 접근이 어려운 지점을 표시하고 응급 시 이동할 경로를 계획하고 표시한다. 사업장 내 작업자에게 응급환자의 가장 적절한 이동 경로를 알려준다.

7.2 수영장 시설에서의 유해·위험요인 및 대책

(1) 수영장 바닥 및 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·위험요인 및 대책은 <표 3>과 같다.

<표 3> 수영장 바닥 및 벽에서의 유해·위험요인과 대책

구 분	유해·위험 요인	안 전 대 책	비고
미끄러운 바닥	바닥의 표면이 미끄러워 넘어짐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	 ○ 바닥의 미끄럼 저항이 "KS G 5821-1 수영장시설-제1부: 일반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"의 규정에 맞도록 조치한다. ○ 임시 조치로 경고표지 또는 미끄럽지 않고 배수가 잘되는 바닥깔개를 설치한다. ○ 바닥의 일부가 심하게 닳아 노후화 되었거나 부분적으로만 수리된 경우, 전체를 미끄러짐 방지 바닥으로 교체한다. ○ 한 장소의 바닥이 서로 다른 재료로 마감된 경우, 한 가지 재료로 통일한다. 	
바닥의 날카로운 부위	평탄하지 못한 타일 마감, 노출된 배수구, 손상된 신축 이음 등으로 인한 날카로운 부위가 형성되거나 돌출되 는 경우	 임시 조치로 문제 부위의 통행을 제한한다. 모든 신축이음은 주변 마감재와 평탄하도록 조치되어야 하며, 이음매의 충진 재료가 제 위치에 있도록 보수한다. 노출된 배수구의 모서리는 덮개를 이용하여 주변 바닥과 평탄하도록 조치한다. 	
바닥 높이의 급격한 변화	계단, 발씻기 장치, 풀 주변 의 샤워기 등 기타의 시설 에 의해 바닥높이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	 ○ 높이 변화가 있는 바닥 부위에 식별이 매우 잘되는 표시를 하거나 눈에 잘 띄는 바닥 타일을 시공한다. ○ 계단코(계단 디딤판의 끝부분)에 미끄러짐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식별이 용이한 색으로 처리한다. ○ 계단의 발판은 미끄러짐 방지 처리를한다. ○ 계단의 양 옆에 난간을 설치한다. ○ 바닥차가 있는 장소에 조명을 밝게 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한다. 바닥차가 있는 장소에는 위험표지를한다. ○ 바닥에 설치한 발씻기 장치를 제거 또는 안전한 장소로이설하고 그 자리는 메우거나 덮어기존 바닥과 동일한 높이로 만든다. ○ 풀 주변의 샤워기를 제거 또는 안전한 장소로이설하고 그 자리는 기존 바닥과 동일한 높이로 만든다. 	
표면이 거친 벽	물기가 있는 장소에서 바닥 으로부터 높이 2 m까지의 벽 표면이 거친 경우	 조적식 벽은 높이 2 m 까지 평줄 눈으로 시공한다. 가능하면 표면이 거친 벽 위에 평평하고 매끈한 벽을 덧대어 세운다. 표면이 거친 벽 앞에 난간을 설치한다. 	

모서리	벽에 날카로운 모서리나 가장자리가 돌출된 경우 또 는 돌출물이 있는 경우	 날카로운 모서리를 둥근 모서리용 타일이나 벽돌로 교체한다. 모서리를 부드럽고 둥근 소재로 감싼다. 가능하면 돌출물이 있는 벽 위에 평평하고 매끈한 벽을 덧대어 세운다. 바닥으로부터 2 m 높이까지 돌출물을 덮을 수 있는 재료로 감싼다. 	
벽에 돌출된 소화전	소화전함이 벽면 위로 돌출 된 경우	○ 통행에 위험을 유발하지 않는 곳으로 이설한다. ○ 노출된 소화전함을 매립형으로 교체한다.	
벽 하부의 전기콘센트	물기가 있는 장소에서 벽 하부에 위치해 감전을 유발 할 수 있는 콘센트가 있는 경우	 콘센트의 위치를 신체가 쉽게 닿을 수 없는 곳으로 옮긴다. 방수 콘센트로 교체한다. 	
방열기 및 난방용 배관	신체가 접촉 가능한 위치 에 방열기 및 난방용 배관 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	 방열기의 방열 온도를 낮추거나 대류형 방열기로 교체한다. 난방용 배관위에 단열재를 포함한 보호용 덮개를 씌운다. 난방용 배관을 이설한다. 	

(2) 수영장 풀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·위험요인 및 대책은 <표 4>와 같다.

<표 4> 수영장 풀내부에서의 유해·위험요인 및 대책

구 분	유해·위험 요인	안 전 대 책	비고
풀 내부의 미끄러운 바닥	풀 내부의 바닥이 미끄러운 경우, 특히 놀이용 풀에서 수심이 점차 얕아지는 부위 의 바닥이 미끄러운 경우	○ 풀 내부 바닥의 기울기와 미끄럼 저항을 파악 해 전문가와 상의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한다. 이때 그동안 발생했던 미끄러짐 관련 사고내 력을 참조한다. ○ 임시로 경고표지를 설치한다.	
 풀 내부바닥의 기울기	수심이 1.5 m 이하 지점에 서 풀 내부바닥의 기울기가 1:10 보다 가파른 경우주30)	○ 가파른 부분의 바닥을 식별이 용이한 색으로 표시한다. ○ 경고표지를 부착한다.	
풀 내부바닥 높낮이의 변화	수심이 1.5 m 이하인 지점 에 계단 등에 의해 바닥 높 낮이의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	 풀 내부바닥에 계단이 있는 경우, 계단코를 주변과 대비되는 색으로 마감해 식별이 용이하게한다. 수심의 급격한 변화가 있는 지점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한다. 수심의 급격한 변화가 있는 지점을 알려주는 울타리나 난간과 같은 시설을 설치한다. 	

G - 118 - 2015

풀 내부바닥의 격자 창살(Grille)	바닥의 격자 창살에 신체의 일부가 낄 위험이 있는 경 우	○ 살 간격이 8 mm를 넘지 않는 격자 창살로 교 체한다.
풀 내부의 파손된 타일	깨지거나 금이 간 타일 또 는 떨어져 나간 타일이 있 는 경우. 특히, 신축이음 주 변 부위의 바닥 타일이 파 손된 경우	 ○ 문제가 되는 부위의 모르타르를 다시 채운다. ○ 금이 갔거나 깨어진 타일을 모두 교체한다. ○ 구조적인 결함이 문제가 된 경우, 전문가와 상 의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한다.
풀 내부의 계단	풀 내부로 돌출된 계단에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	○ 돌출 부위가 적은 진출입 수단으로 교체한다.
풀의 사각지대	수영장 안전요원의 감시에 사각지대가 있는 경우	○ 안전요원의 위치를 재조정한다. ○ 안전요원을 추가로 배치한다.
풀 양 끝의 바닥	풀 양 끝의 바닥이 수면보 다 높게 되어 있어 다이빙 을 할 경우, 부상이 위험이 있는 경우	○ 인접한 지점의 수심이 1.5 m 이하인 경우, "다 이빙금지" 표지를 부착한다. ○ 이동 가능한 울타리를 설치한다.
고정식 출발대	출발대가 고정식으로 되어 있어, 훈련 안 된 초보자가 이용하거나 충돌 또는 전도 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	○ 탈착 가능한 출발대로 교체한다.○ 허가를 받지 않는 사람의 사용 금지를 알리는 표식을 한다.○ "다이빙금지" 표지를 부착한다.
수면 아래의 시설물	○ 물속의 시설물로 인해 넘어지거나 손발이 끼일 위험이 있는 경우 ○ 레인선(lane line)의 연결 고리가 돌출된 경우	 수심 1.5 m 이하의 지점에 위치한 돌출물은 평평한 것으로 교체한다. 레인선의 연결고리는 돌출되지 않는 방식으로 교체하거나, 교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거한다.
수면과 풀 가장자리의 높이차	수면과 풀 가장자리의 높이 차가 38 cm를 넘는 경우(특 히 파도풀의 경우). ○ 수심이 깊은 지점에서 풀의 가장자리로 빠져 나오기 힘듦 ○ 수면으로부터 높은 위치 에서 물로 뛰어들거나 다이빙할 경우, 풀의 바 닥에 충돌할 수 있음	 ○ 수면에 인접한 벽면에 돌출되지 않는 방식으로 손잡이를 설치한다. ○ 입수를 금지하기 위해 풀의 가장자리에 울타리 를 설치한다. ○ "다이빙금지" 표지를 부착한다.

KOSHA GUIDE G - 118 - 2015

(3) 수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유해·위험요인 및 대책은 <표 5>와 같다.

<표 5> 수영장에서의 기타 유해·위험요인 및 대책

구 분	유해·위험 요인	안 전 대 책	비고
투명소재의 사용	풀 주변에 깨지기 쉬운 투명소재가 사용된 경 우	○ 깨지기 쉬운 투명소재를 파손에 안전한 소재로 교체한다. ○ 깨지기 쉬운 투명소재와 충돌하 지 못하도록 그 앞에 난간을 설 치한다.	
눈부심을 유발하는 창문	창의 위치와 디자인이 눈부심을 유발하여 풀 을 감시하기 어렵게 하 거나 또는 과도한 반사 를 유발하는 경우	 풀 주변 안전요원의 감시 위치를 변경한다. 채광을 조절할 수 있는 블라인드를 설치한다. 색유리를 사용하여 채광의 일부를 차단한다. 외부에 나무를 식재하여 채광을 조절한다. 	
수심 표지	수심 표지의 위치가 잘 못되어 이용자가 표지 를 못 본채로 입수하는 경우	 ○ 가능하다면 볼 수 있는 모든 지점에 수심을 표시한다. ○ 수심이 얕아 다이빙을 할 수 없는 지점에는 식별하기 용이한 "다이빙금지"표시를 한다. ○ 풀 주변의 벽에 수심표지를 하기힘든 경우, 풀 가장자리의 바닥에 표시한다. 또는 풀 전체의 수심을 알려주는 현황도를 탈의실이나 풀 입구에 게시한다. ○ 풀의 상부에 수심표지를 달아맨다. 단, 여타의 다른 천장 게시물과 혼동되지 않도록 처리한다. 	